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77호
------	------

<p>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---

제 출 자	행정복지국장
제출연월일	2023. 5. 16.

예산실장 심사필
----------

#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77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5. 16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  
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등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
- 주민자치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의 공정한 추첨을 위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
(안 제9조의2)
- 나. 주민자치회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제한을 삭제함(안 제19조)
- 다.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서류의 보존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함(안 제4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[기획감사실-4099(2023.4.20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[복지정책과-12966(2023.4.19.)호]
  - 개선의견 : 성별 균형 참여에 관련한 개선의견 제공
  - 권고사유 : 위원회 구성의 성별을 고려할 때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 및 운영한다.
  - 반영여부 : 반영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4094(2023.4.4.)호]
- 4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3. 4. 5. ~ 2023. 4. 26.
  - 나) 예고결과 : 총 2건(반영 1건, 일부반영 1건)(붙임참고)
- 5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자치행정과(041-635-3604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4호 중 “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”를 “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해”를 “대해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계층이 참여할”을 “계층, 단체, 지역민이 참여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“구성 및 선출방법”을 “구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위원선정관리위원회) ① 읍·면·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(이하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기준 확인
2. 제9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

② 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③ 위원장은 읍·면·동장이 한다.

④ 현직 주민자치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 관리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.

**제19조** 중 “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**제21조**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, “제4호부터 제6호”를 “제5호부터 제7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항제4호부터 제6호”를 “제1항제5호부터 제7호”로 한다.

4.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**제36조**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의한다”를 “협의·자문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**제37조**제5항을 삭제한다.

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46조(서류의 비치 및 보존)**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위촉·해촉 관련 서류
2.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

3.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자치회는 제9조, 제14조, 제15조, 제45조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게시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	관	부	서	성	명
입 안 자	자 치 행 정 과 장			송	홍 섭
	새 마을 자 치 팀 장			황	준 용
	담 당 자			박	영 미 (746-5242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능) 주민자치회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‘특별법’이라 한다)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에 따른 <u>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</u></p>	<p>제5조(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 ----- <u>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<u>만 18세</u>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의 자격) ① -----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<u>대해</u>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.</p>	<p>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대해 제9조의2 규정</u> ----- ----- <u>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</u></p>



⑩ (생략)

<신설>

제19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⑩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위원선정관리위원회) ①

읍·면·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선정을 위하여 위원선정관리위원회(이하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기준 확인
2. 제9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

② 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③ 위원장은 읍·면·동장이 한다.

④ 현직 주민자치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⑤ 관리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.

제19조(위원의 임기) -----  
----- 한다.

제21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,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~ 6. (생략)

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6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제21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4호-----  
-----  
----- 제5호부터 제7호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5. ~ 7.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
② -----  
----- 제1항제5호부터 제7호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6조(기능) -----  
----- 협의·자문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37조(구성) ① ~ ④ (생략)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촉 등으로 꺾어진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설>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46조(서류의 비치 및 보존) ①

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위촉·해촉 관련 서류
2.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
3. 그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자치회는 제9조, 제14조, 제15조, 제45조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해당 없음

나. 추계결과

○ 해당 없음

3. 작성자

자치행정과장 송 홍 섭

<b>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</b>				
관리번호	2023A 충남논산041			
정책명	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		
소관부서	기관명	충청남도 논산시		
	부서명	자치행정과		
	담당자명	박영미	전화번호	041-746-5245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3년 4월 4일	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자치행정과)	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항 정비 및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	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	
	'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'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 있음			
		구분	해당 내용 (제·개정 법령안)	개선안 (법령 수정안)  검토사유
1	2	제9조의 2 (위원선정관리위원회)  ... <b>(중략)</b> ...  2. 제9조에 따른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 ② 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읍·면·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<u>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</u>	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<u>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거를 남겨두도록 함	

	장이 위 축한다.	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한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&lt;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&gt;참고</li> </ul> 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.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b>검토의견 반영계획서</b>	2023년 4월 25일 까지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3년 04월 19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논산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이주연/041-746-5352)</p> <p>자치행정과장 귀하</p>			

## 붙임 3

## 입법예고 의견제출

### □ 의견개요

1. 예 고 기 간 : 2023. 4. 5. ~ 2023. 4. 26.(21일간)
2. 의견제출자 : 가야곡 주민자치회장,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
3. 제출의견

제출자	제출의견	비고
가야곡면 주민자치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9조(위원의 선정) ⇒ 특정단체 및 단일법정리, 부락에서는 5인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,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함.</li> <li>○ 제19조(위원의 임기) ⇒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. 다만 전문가,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함.</li> </ul>	반영  미반영
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9조(위원의 선정) ⇒ 제9조제1항제1호 ~ 제2호 조항 현행 유지 ⇒ 제9조제2항의 내용에 특정 계층, 단체,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함.</li> </ul>	반영  반영

### □ 검토결과 : 총4건(반영 3건, 미반영 1건)

현행	당초(입법예고안)	변경(조치계획안)
<p>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<u>주민자치회</u>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.</p> <p>1.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</p> <p>2. 정원의 100분의 40은 당해 읍·면·동 소재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 및 기타 읍·면·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은 사람.</p> <p>3.삭제&lt;2022.5.2.&gt;</p>	<p>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<u>주민자치회</u> 위원은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삭제&lt;2022.5.2.&gt;</p>	<p>제9조(위원의 선정) ① <u>주민자치회</u>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.</p> <p>1.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</p> <p>2. 정원의 100분의 40은 당해 읍·면·동 소재 각급 학교·기관·단체 및 기타 읍·면·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은 사람.</p> <p>3.삭제&lt;2022.5.2.&gt;</p>

현행	당초(입법예고안)	변경(조치계획안)
<p>②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청·장년층(65세 이하)은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,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 및 연령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②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청·장년층(65세 이하)은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,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 및 연령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②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, 청·장년층(65세 이하)은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,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, 단체, 지역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 및 연령이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19조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9조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</u></p>	<p>제19조(위원의 임기)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

**□ 「지방자치법」**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**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**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